

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60호

연산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460번지 일원 연산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26년 3월 4일  
부 산 광 역 시 장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| 구 역 명             | 위 치              | 구역면적<br>(㎡) | 정비구역<br>해제기한 연장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
| 연산8<br>재개발사업 정비구역 | 연제구 연산동 460번지 일원 | 24,747      | 2028. 2. 28.까지  | -  |
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 부터 2년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해당기한 도래전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 요청한 바, 주거 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3. 관련 세부내용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(051-888-4231), 연제구 건축과 (051-665-5052)에 관계서류 비치